기업지배구조헌장

PAN OCEAN

팬오션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주 주	3
제 1 절	주주의 권리	3
제 2 절	주주의 공평한 대우	4
제 3 절	주주의 책임	5
제 2 장	이사회	5
제 1 절	이사회의 기능	5
제 2 절	이사회의 구성	6
제 3 절	이사회의 운영	6
제 4 절	이사의 자격	7
제 5 절	이사의 선임	7
제 6 절	사외이사의 역할	8
제 7 절	이사의 책임	8
제 8 절	평가 및 보상	9
제 3 장	감사기구	9
제 1 절	감사위원회	9
제 2 절	외부감사인	10
제 4 장	이해관계자	11
제 5 장	곳 시	11

팬오션 기업지배구조 헌장

制定 2022. 2. 11.

[전 문]

팬오션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운선사로서, 해운 영역에서 축적한 사업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곡물유통사업 및 물류사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리딩 해운물류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오션 주식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고객, 임직원,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며 함께 권익증진하기 위해서 바르고 알찬 투명 경영의 바탕이 되어줄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제 1 장 주 주

제1절【주주의 권리】

- 제1조 주주는 팬오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① 이익 분배 참여권
 - ②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③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④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 제2조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 ① 정관의 변경
 - ②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
 - ③ 해산
 - ④ 자본의 감소
 - 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⑥ 소유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자본의 증가 등
- 제3조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 제4조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주주의 공평한 대우】

- 제6조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단,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제7조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제8조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된다.

제3절【주주의 책임】

- 제9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 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장 이 사 회

제1절【이사회의 기능】

제11조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경영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진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결의
-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결의
- ④ 중요한 투자사업, 대규모 자금차입,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2절【이사회의 구성】

- 제13조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14조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 제15조 이사회는 그 역할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식 경험 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하며, 그에 따라 이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6조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한다.

제3절【이사회의 운영】

- 제17조 이사회는 법령,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제19조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 이사회는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제21조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4절【이사의 자격】

- 제22조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3조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 사고방식, 실용적 지식, 성숙한 판단력 및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24조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절【이사의 선임】

제25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단,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7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를 균형 있게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구성한다.

제6절【사외이사의 역할】

- 제28조 사외이사는 기업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 제29조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한다.
- 제30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제31조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한다.

제7절【이사의 책임】

제32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제34조 회사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8절【평가 및 보상】

- 제35조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제36조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 사 기 구

제1절【감사위원회】

제37조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제38조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 ②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 보고의 정확성 검토
- ③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④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⑤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39조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외부감사인】

- 제40조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41조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 해 관 계 자

- 제43조 회사는 고객 채권자 협력사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 제44조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제45조 회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 5 장 공 시

- 제46조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시한다.
- 제47조 정기공시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및 주주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시한다.
- 제48조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부 칙

이 헌장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